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6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 ~ 제3조)
- 나. 제2장 규제특례 (안 제4조 ~ 제7조)
- 다. 제3장 특화사업 운영 (안 제8조 ~ 제12조)
 - 1) 특화사업의 범위
 - 2) 재정지원, 수탁기관의 선정요건 등, 지도·감독
- 라. 제4장 특구운영협의회 (안 제13조 ~ 제19조)
 - 1) 설치 및 기능, 구성
 - 2)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 직업교육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역 특화발전특구로써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동작 직업교육특구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동작 직업교육특구(Dongjak vocational education Special Zone)”로 한다.

제2장 규제특례

제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 등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지주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제3장 특화사업 운영

제8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세대 직업교육
2. 직업전문 평생교육

3. 일자리 인프라 기반확충
4. 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5. 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6. 창직형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요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취업 연계실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차별성의 우수성
2. 일정한 재정부담능력과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탁월성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특화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특구운영협의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작 직업교육특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특화사업 실적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홍보 및 특구 발전 방향 제시
3.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업교육 관련 정보교류 및 활성화 도모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특화사업 관련 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 4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특화사업 수행기관 임직원 또는 특화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위하여 학식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대표로서 전체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9조(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 결정·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